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5

June 3,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5.)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 3.	• (이슈) 상품 정보제공 고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공정위, 자동차 부품 시장 분석 계획 5. 3.	• (이슈)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3개 시장 분석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의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요독점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 시장 등의 분석에 나섬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 4.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 13.까지 입법 예고
공정위,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 9.	• (이슈)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u> 5. 13.	• (이슈)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 결과 발표
<u>공정위, 내부거래 공시부담 개선 관련 보도 해명</u> 5. 17.	• (이슈) 내부 거래 관련 공시제도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가 내부 거래 관련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제도 개선의 세부적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u>공정위,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u> 5. 19.	• (이슈) 가맹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5. 20.부터 서울·경기·부산·인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u>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u> 5. 20.	• (이슈)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음
II. 주요 소식	
<u>공정위, 검찰과 전속고발권 운영 방안 합의</u> 5. 1.	• (이슈) 전속고발권 운영 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검찰과 기업 담합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고발 전부터 검찰에 사전 제공하는 등 전속고발권 운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u>공정위, 지역기업 우대 규정 개선</u> 5. 1.	• (이슈) 지역기업 우대 규정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역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171개 중 149개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 완료했다고 밝힘
<u>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u> 5. 3.	• (이슈)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주요내용)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u>尹 정부, 규제 기준 완화 움직임</u> 5. 11.	• (이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추진 계획 • (주요내용) 새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개선 계획 5. 11.	• (이슈)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개선 계획 • (주요내용) 공정위는 새 정부의 기초에 맞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임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 5. 12.	• (이슈)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신설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새 정부,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완화 계획 5. 14.	• (이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완화 • (주요내용) 새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적용 범위를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관련 논란 5. 15.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학계·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지침을 보완할 예정으로 알려짐
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5. 15.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플랫폼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논의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재정비 추진 5. 17.	• (이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발주
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 5. 23.	•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예정
공정위, 온라인교육 서비스 소비자 실태조사 착수 5. 23.	• (이슈) 온라인교육 서비스 소비자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 연구 착수 5. 25.	• (이슈)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연구에 착수함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 계획 발표 5. 26.	• (이슈)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원장은 (i)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ii)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예정임을 밝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민간 주도 협의기구 출범 예정 5. 26.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민간 주도 협의 기구 •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협의기구가 연내 출범할 예정임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5. 27.	• (이슈)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 (주요내용) 대검찰청, 한국공정경제연합회, 한국경제포럼은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III. 국회 발의법안	
<u>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u> (김예지 의원안) 국회 제출 5. 3.	• (이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문체위 소속 김예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u> (정부안) 국회 제출 5. 4.	• (이슈)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5)

I. 보도자료

1.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 3.)

-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인증 제품 표시)**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 **(유통기한 표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 정보 표시)**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 **(기타 지침)** 그 밖에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위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2. 공정위, 자동차 부품 시장 등 분석 계획 (5. 3.)

-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촉진 및 신산업분야 경쟁이슈 선제 대응 목적으로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시장 분석 및 관행 개선을 추진
- 특히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시장은 상위2개사(社)의 납품실적이 61.5%에 달하는 수요독점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주요 부품의 원하청지도를 생성하여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 분석 및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3.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 4.)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 13.까지 입법예고함
 -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 나목)
 - **(용어 정비)**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 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안 제5조)

4. 공정위,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 9.)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기본 산정기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1차·2차 조정)**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 가중사유를, 2차 조정에서는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 등 감면사유만을 반영하도록 단순화함
 - **(부과과징금 결정 기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5.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13.)

-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되었음
 -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함
 -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답하였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6.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부담 개선 관련 보도 해명 (5. 17.)

- **(언론 보도)** 일부 언론은 공정위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판단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하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7. 공정위,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5. 19.)

- 공정위는 2022. 5. 20.부터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자체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자체는 이미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범위가 확대됨
 - **(종전 지자체 과태료 부과 대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 **(확대 후 지자체 과태료 부과 대상)** (i)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ii)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iii)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iv)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v)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8.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5. 20.)

-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북에는 (i) 수급사업자의 법적권리, (ii)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iii) 바람직한 조정절차, (iv)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위반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며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원사업자는 (i) 협의 개시 의무, (ii) 성실 협의 의무, (iii) 계약서 기재의무, (iv) 조정 협의 관련 서면 보존 의무가 있으며, 부당특약 및 보복조치가 금지되어 있음
 - **(바람직한 조정절차)** (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서면에 적시하고, (ii) 수급사업자는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보관하며, (iii) 각자 희망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함
 -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위반 신고)** (i) 조정 거부/결렬 시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ii)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또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검찰과 전속고발권 운영 방안 합의 (5. 1.)

- 공정위와 검찰은 (i) 기업 담합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고발 전부터 검찰에 사전 제공, (ii) 동의의결 과정상 소통 실질화, (iii) 미고발 사건 정보 공유, (iv)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정보 공유, (v) 반기별 협의체 운영, (vi) 인사 교류 확대 등이 담긴 전속고발권 운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2. 공정위, 지역기업 우대 규정 개선 (5. 1.)

- 공정위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자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경쟁 수단을 약화시키거나 지역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규칙 171개 중 149개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대상 확대)** 경남/경기/강원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 **(지역 건축사 우대 규정 삭제)** 경남/대전/경기 등 8개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우수기업인 지원 범위 축소)** 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 지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 개방)** 부산/서울/울산 등 6개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3.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3.)

- 새 정부 인수위는 지난 5. 3. 110대 국정운영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 있는 국정과제는 3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i) 규제완화와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정책 기조로 하여,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경쟁영향평가센터 구축 등 원활한 경쟁 매커니즘의 운영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ii)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ii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iv) 대기업 집단 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관련 업무 부담을 축소할 계획임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을의 피해 구제)** (i)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확립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ii) 납품업체 등 "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며, (iii) 중·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적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iv)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 (i)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ii) 불공정거래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하며, (iii) 대·중소기업 간에 새로운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활성화함
 - 자세한 내용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참조

4.尹정부, 규제 기준 완화 움직임 (5. 11.)

- 새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i)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 기준을 종전의 연간 규제 비용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ii) 핵심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며, (iii) 중요 규제 심사 비율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심사 부담을 고려, 규제개혁위원회 인력 충원 등 조직 개편에 착수할 계획

* '중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음

5.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개선 계획 (5. 11.)

- 공정위는 새 정부의 '자유로운 시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임
 - (i) '경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선하고, (ii)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iii)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하며, (iv)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v) 자율규제 방안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6.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 (5. 12.)

-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M&A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함

7. 새 정부,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완화 계획 (5. 14.)

- 지난 13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중소 스타트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공정위가 내년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되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액은 추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i) 단독 50% 이상 또는 (ii) 셋 이하 합산 75% (이 경우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정에서 배제 (공정거래법 제6조)
- 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상승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의 적용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8.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관련 논란 (5. 15.)

- 공정위가 지난 2022. 1. 6. 행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의 행정예고 기간이 2022. 1. 26로 종료되었으나 시행 여부 결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에 대한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심사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며 심사지침 통과 일정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 특히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위법 사례 중 특정 업체의 사건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9. 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5. 15.)

-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플랫폼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 논의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은 현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하게 자율규제 논의기구에 참여한 기업들이 의견을 모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10.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재정비 추진 (5. 17.)

-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발주
-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의 연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각종 통계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고 시스템 재정비의 목표라고 밝힘

11. 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 (5. 23.)

-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시 자동으로 가격 상승분이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는 구리, 알루미늄 등 활용도가 높고 공인된 시장가격이 있는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을 활용하는 형태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12. 공정위, 온라인교육 서비스 소비자 실태조사 착수 (5. 23.)

- 공정위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음
- 공정위는, (i)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비용, 수강조건, 광고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ii)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분쟁조정 성립 및 미성립 사례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을 분석할 예정
-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교육 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

13.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 연구 착수 (5. 25.)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
 - **(현행 정액과징금 부과 상한 적정성 검토)** 현재 공정위는 기술유행행위 등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10억원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유행행위 등은 제조업 생태계를 망치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위의 정액과징금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억지력 제고, 공정거래법 개정상한 상향 등 상황을 고려해 현행 정액과징금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임
 - **(정률과징금 부과시 위반금액 비율 개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정률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도급대금과 관련없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는 정률과징금 부과를 위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고 대체기준의 개발 필요성을 분석할 계획임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 조정)** 공정위는 현행 중대성 판단기준이 행위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할 계획

14.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 계획 발표 (5. 26.)

- 공정위원장은 5. 26. '2022 APCC(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에서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 중"이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 집행에 단순히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을 반영해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지배력,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힘

15. 온라인 플랫폼 시장 민간 주도 협의기구 출범 예정 (5. 26.)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협의 기구가 연내 출범할 계획임. 위 협의기구는 분쟁조정을 비롯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약, 모범계약서 등을 만들 예정임
- 정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논의하되, 제약이 있으면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범부처 정책협의체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

16.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5. 27.)

- 대검찰청, 한국공정경영연합회, 한국경쟁포럼은 5. 27.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음
-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형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대체로 형벌조항이 과잉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인 만큼 준법경영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강우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과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준법경영과 행정조사, 형사소송 증명 수준, 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공정거래 형벌체계 전반을 두루 살펴 보았고 특히 준법경영 프로그램 (CP) 완비 여부와 실제 작동 여부는 법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음. 고진원 부장검사는 '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검찰의 CP감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로서는 구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CP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음. 강수진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법인의 범죄능력, 부당공동행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합의의 의미 및 경쟁제한성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증거수집절차와 적법절차원칙,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두루 다루었음. 특히 강수진 교수는 기업의 준법경영은 공정거래형벌법의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집행을 통해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준법 경영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III. 국회 발의법안

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김예지 의원안) 국회 제출 (5. 3.)

- 국회 문체위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안 제6조 제5호 및 제19조 제6항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5. 4.)

- 정부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